의 안 번 호	제487호
의결연월일	2022.4.4.

-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3. 28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 : 2022. 03. 28.

○ 상 정 일 자 : 2022. 04. 04.

제27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〔농업기술센터소장 : 전달수〕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삭제하고,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고

○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신설하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 등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임대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

내용 신설(안 제5조제6항)

○ 농기계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함(안 제8조제3항)

○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2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함(별표 2 및 안 제9조제1항 삭제, 안 제9조제2항)

○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신설(안 제10조제1항제1호)

- (100분의 50 감면 대상)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국가 유공자, 장애인 농가, 여성 농업인 등

○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중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삭제(제19조제21호 삭제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완호)

❍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은 임대 농기계의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삭제하고,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고
사용료 감면은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서 상대적 약자와 우대가 필요한 수급자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여성농업인 등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**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 제5항에서** 농업기계의 임대료 등 임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(시행규칙)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**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(농업기계의 임대사업)**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은

별표 1의2와 같이 하도록 하여 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,

❍ 사용료 감면확대는 취약계층이나 우대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규제개선 이행점검 조례정비 요청사항과 충남도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계획(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감면)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❍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, 제153조(사용료)와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**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❍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 음